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유 삼(02-2100-2601)	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517)
	금감원 기업공시국장(대행) 김 정 흠(02-3145-8090)			정 준 아 팀장 (02-3145-8470)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. 12. 13. 제22차 정례회의에서
 -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(주)드래곤플라이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,
 -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(주)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,
 -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(주)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,
 -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(주)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
-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

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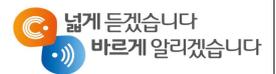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 - 팩스 : 02-3145-5544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(주)드래곤 플라이	-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중요사항 기재누락	- 과징금 2,700,000원
(주)엔지켐 생명과학	-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6,000,000원
(주)엔에스브이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6월
(주)씨엘 인터내셔널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3월

- (주)드래곤플라이는 2017. 3. 14.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5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627.7억원의 12.1%에 해당하는 76.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,
 -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

- (주)엔지켐생명과학은 2017. 8. 10. 이사회에서 산업시설용지 BT-10-8필지를 2015년 자산총액 303.9억원의 17.0%에 해당하는 51.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법정기한인 2016. 8. 11.을 80영업일 경과한 2016. 12. 8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- (주)엔에스브이는 2016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. 5. 30.을 2영업일 경과한 2016. 6. 1.에 지연제출하였으며,
 -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. 8. 16.을 7영업일 경과한 2016. 8. 25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- (주)씨엘인터내셔널은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. 8. 16.을 8영업일 경과한 2016. 8. 26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